

제433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17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2)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5)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3)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5)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5)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8)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1)
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0)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5)
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5)
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2)
12.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5)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0)
1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4)
1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1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
1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2)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4)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5)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9)

상정된 안건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2)	2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5)	2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3)	2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5)	2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5)	2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8)	3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1)	3
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0)	3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5)	3
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5)	3
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2)	3
12.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5)	3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0)	3
1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4)	3
1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3
1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	3
1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2)	3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4)	3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5)	3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9)	3

(10시04분 개의)

○소위원장 고민정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2)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5)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3)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5)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5)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8)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1)
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0)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345)
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45)
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92)
12.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5)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0)
1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4)
1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1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
1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2)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4)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5)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9)

○소위원장 고민정 의사일정 제1항부터 20항까지 20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내용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심의되었기 때문에 쟁점이 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행위까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에 관련해서는, 이 ‘현저히’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었습니다.

두 번째, 침해학생의 조치에 대해 피해교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교원에게 법률상의 이익이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익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위원님께서 법사위 쪽 의견을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법사위 전문위원실과 실무적으로 협의를 좀 해 봤는데 ‘현저히’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앞에 몇몇 사례를 열거하는 방식 등으로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워낙 광범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현저히’라는 표현은 다수 입법례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의 면직 사유와 관련해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렇게 표

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영업의 지원 등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이런 표현도 있고 그 외 다수 입법례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교원의 이의제기 부분에 관해서는 본법이 교원 교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해당 교원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해석상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지만 이 법에 이렇게 명시를 한다면 그런 논란에 대해 입법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는 또 행정소송이 아니고 일반 형사소송도 아니고 행정심판에 관해서 피해교원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문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둔다면 그것이 행정심판법과 배치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사 전문위원실에서도 동의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검토보고 단계에서 문제 삼을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그런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교육부에서 동의 입장이지만 일부 시도에서 신중검토 입장도 있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했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저도 이후에 많이 검토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현저한’이라는 표현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여기 있다는 것, 충분한 사례를 저희들이 가져왔다는 것을 일일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부분을 해석해 보면 피해교원 그 부분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법체계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정성국 위원 법사위에서 봤을 때도 이게 문제가 되어서 계류되는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는 정도의 이야기는 된 것 같아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판단인데.

만약 여기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첫 번째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피해교원 절차에 관련된 부분은 좀 빼고 첫 번째 항목만 올리자는 쪽에 의견이 훨씬 많으시다면 저도 고려할 생각은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위원님 표현을 들어 본다면 굳이 우리가 그것을 또 빼고 할 정도까지냐 하는 판단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몇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저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시지요.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전문위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지 않나요?

○전문위원 윤상열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 윤상열 예.

○백승아 위원 이게 유일한 거지요?

○전문위원 윤상열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사실 현장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잘 안 열립니다. 교권 침해당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지 선생님이 굳이 교권보호위원회 열어 달라고 하지 않아요. 열에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닌데 이의제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정도의 절차는 있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의제기한다고 해서 바로 그 학생에게 더 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절차가 다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학교가 사법화되기 때문에 어떤 사법적 쟁점의 장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교사들이 에어컨을 잘 틀어 주지 않는다고 또는 교권 침해를 당해서 그에 대해서 교보위를 열려고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해 버리는 사례가 대다수,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미 학교는 사법 쟁점의 장이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교사의 권한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도 물론 말씀들에 동의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론 교육을 침해하거나 폭력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교육 목적이라는 것이 어떤 응보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겠지요. 이를테면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고 이런 게 교육의 역할이 돼야 될 텐데, 너무 뻥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부분은 어떤 최후의 보루로 좀 남겨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 현장에서?

이를테면 해당 조치에 대해서 피해교원이 직접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 교육적 지도라는 것이 갈등이라는 것으로 제도화돼서 고작돼 버리면 회복적 접근 이런 것들은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다가 어떤 학생 하나의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 학생은 아마 자퇴를 해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혹은 학폭에서도 그렇지만 대응 능력에 있어서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 대응 능력의 격차가 되게 많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집안의 여러 사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비용을 들여 가면서 법적으로 잘 대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거기서도 처지거나 또 소외될 수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물론 우리가 교육 침해를 한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여러 정황들이 전개될 수 있는, 학폭을 빌려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까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이런 행정심판까지 고려해 가면서, 그래야만 교권이 보호된다고 하는 것에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교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에는 100% 찬성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학교교육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제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전반부의 ‘현저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이 ‘현저한’이라는 단어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뭐가 어렵다는 거지요? ‘현저한’ 앞에 어떤 경우가 현저한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윤상열 ‘이러이러한 경우 등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례들이 너무 광범위해서 특정 몇몇 가지만 짚어서 앞에 열거하기에는 좀……

○조정훈 위원 그래서 그냥 ‘현저한’이라는 것은 쓸 수 있지만 그 사례를 앞에 적시해서 ‘등’ 하는 것은 어렵다?

○전문위원 윤상열 예, 포괄하는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몇몇 가지만 한정해서 앞에 넣기는 좀 기술적으로……

○조정훈 위원 그래도 ‘현저한’이라는 단어는 쓸 수 있고?

○전문위원 윤상열 ‘현저한’이라는 표현을 살려 두고 실무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법을 두 번째 논의하는 거고 정성국 위원님께서 유연한 입장을 밝혀 주셔서 우리 법안소위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 공감대를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강경숙 위원님께서 ‘현저한’이라는 표현은 동의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두 번째 교권 보호에 관한 내용은 아직 좀 과한 게 아니냐는 입장이신데……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조정훈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조정훈 위원 저는 최대한 만장일치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추가……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그 조정은 제가 할 테니……

○조정훈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첫 번째 ‘현저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고, 두 번째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빼는 것에 동의한다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저는 위원회의 입장을, 다른 위원님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소위원장 고민정 저도 제 개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저한’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도 종종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것을 너무 구체화시키게 되면 폭이 더 좁아질 것 같아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오히려 막는 방향이 될 것 같아서 ‘현저한’이라는 단어는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서 법사위에서는 법적 절차나 체계·자구에 문제는 없다, 다만 이게 정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가 남아 있는 것이라 저희 교육위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될 텐데, 저는 어쨌든 여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아까 백승아 위원님께서 교보위에서 해소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보위에서 여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법으로 행정심판을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해서 하게끔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얘기할 때마다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가 늘 논란이고 논쟁의 부분이기에는 한데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곳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을 채워가는 것을 순서로 본다면 아직은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어렵지만 학생들을 우선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정성국 위원님이 그런 의견까지 주셔서 그렇게 조정을 좀 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법안 1개 가지고 너무 지체하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 약간씩 짜증이 올라오기 때문에 쿨하게, 두 번째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에 대한 이의 절차 마련 이것은 삭제하고 그냥 교육활동 침해 범위 확대 쪽으로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려 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윤상열 그러면 위원장님, 12페이지 보시면 부칙에 행정심판에 관한 적용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뺀 다음에 이 적용례도 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9~11항에 같은 법률개정안이 있으므로 추후에 함께 의결하겠습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자료 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정성국 의원안 박성준 의원안이 있는데 내용은 학교의 폐쇄명령, 미인가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그 금액과 절차, 그다음에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안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요건·부과대상과 관련해서 정성국 의원안은 학교의 폐쇄명령, 미인가 시설의 폐쇄명령 두 가지 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이고요. 박성준 의원안은 미인가 시설의 폐쇄명령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학교의 폐쇄명령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도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인가 시설의 폐쇄명령에 대해서는 미인가 시설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만 형

사처벌이 규정돼 있고 폐쇄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미인가 시설의 폐쇄명령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학교의 폐쇄명령 위반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현은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입법례가 ‘부과한다’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는 내용으로 5페이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항에 대해서만 부과하면서 결론은 ‘부과한다’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과 관련해서는 정성국 의원안은 1억 원, 박성준 의원안은 3000만 원을 상한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형사처벌을 보면 학교 폐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인가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벌금액수가 3000만 원 이하이고, 거기다가 1년에 두 번 반복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억 원보다는 3000만 원을 상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에 보면 부과금액 산정기준은 최소 한 가지 이상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8페이지 수정의견에 보면 일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 등을 고려하여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관련된 다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9페이지 보시면 행정기본법 적용 관련해서 정성국 의원안에서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에 보면 기본 절차가 이행부과금과 관련해서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와 달리 규정할 때만 개별법에서 규정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기본법에 적용되어 있는 내용은 빼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내용은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11페이지 수정의견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31조제2항부터 6항까지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부칙 내용을 보시면 대통령령 정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행은 6개월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리고 어느 폐쇄명령부터 적용을 할지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적용례를 두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두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발의하셔서 지금 학교와 미인가 교육시설이 폐쇄명령을 받았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조항을 굉장히 강화하는 건데요. 그러면 법안이 필요하게 된 배경이 교육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폐쇄명령 그리고 미인가 시설 폐쇄명령을 했는데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까? 이 통계가 어떻습니까? 이런 법이 필요할 정도로……

○교육부차관 최은옥 최근 3년간 폐쇄명령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폐쇄명령을 한 사례조차 없지요, 그러니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도 따질

것도 없이.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법이 이렇게 필요하게 된 걸까요? 그러면 과거에는 있었습니까?

최근 3년간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행법, 이 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제67조에 이미 미인가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한 법에서 제한하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이미 초·중등교육법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하는 이유와 그리고 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두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저희가 최근 3년간 폐쇄명령을 한 사례는 없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있고, 그런데 벌금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보니 학교 폐쇄명령에 대비해서 여기도 조금 더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럼 정성국 위원님이나 박성준 위원님께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금 얘기를 하시겠어요?

○**정성국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등록 교육시설이나 교육부, 교육청의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쓰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건데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 미인가 국제학교가 130곳에 달하고 있고요, 그 미인가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은 약 2만 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말씀처럼 사례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는 있는데 현재 이런 미인가 국제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상황이라면, 최근 몇 년간 이런 사례가 있었냐 없었냐보다는 반드시 앞으로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 법을 통해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의 책무를 망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인가 국제학교 교육시설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박성준 위원**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없는데 정성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가를 받지 않은 국제학교도 있고요. 대안학교라고 하는 이름하에서 미인가 시설이 꽤 많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박성준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극우단체들이 운영하는 미인가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관용적 태도로서 그냥 방임한 것 아니에

요? 그냥 놔둔 것 아닙니까. 이제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지요.

국제학교나 극우단체의 무슨 대안학교라든가 그런 학교들이 남용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국가관을 만들어 주고 그 가치를 설립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미인가 시설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실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지책으로서는 분명히 필요한 거고 그랬을 경우에 이런 근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이 법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저도 법안이 꼭 사건 터지고 나서 후속 대책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기는 하는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어서 저는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두 의원이 발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김준혁 위원 저는 이 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성국 의원안 박성준 의원안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폐쇄랑 미인가 두 개 다 들어가느냐 아니면 미인가만 들어가느냐인데 주로 보면 정성국 의원안안이 조금 더 넓고 포괄적이에요, 금액도 좀 크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있으신 거지요?

○정성국 위원 예,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알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박성준 의원님의 안을 좀 더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안 자체는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행 금액과 관련해서는 박성준 의원님안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전문위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안을 좀 더 존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김민전 위원님이나 서지영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제가 왜 반대하는지……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잠시만요.

백승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를 일단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저는 교육부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강 위원님이나 의견 없으십니까?

○서지영 위원 저는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미인가 교육시설에 관한 자료를 나중에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논란과 논쟁들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께서 극우교육을 하는 미인가 단체가 있다, 극좌교육을 하는 곳도 발견이 됐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실시함

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저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교육부가 개입할 수 있으나 이미 미인가 교육시설이라고 하면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학부모들이 계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들의 자유를 존중해 줄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아주 최소한으로 저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과정에서 만약에 학생들의 인권의 문제 그다음에 학생들의 교육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자유로운 선택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규제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미인가 학교들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이게 뭐 극좌 극우의 논란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나왔을 뿐인 것이고.

그러면 제가 교육부에 여쭙겠는데요.

지금 미인가 시설에 대한 일방적 폐쇄명령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폐쇄명령 했는데 안 들었을 경우에 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설인 경우에 폐쇄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학교정책관 김영진입니다.

미인가 교육시설은 학교의 설립을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가받지 않은 국제학교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거기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학습권 침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인가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폐쇄명령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학교 폐쇄명령보다는 형사처벌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긴 했는데요, 이러한 학교 폐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느냐고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폐쇄명령은 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학교의 명칭이라든지 수업의 운영 과정이라든지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요 법원 판례에서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김민전 위원님.

○박성준 위원 불법 운영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불법이잖아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예, 맞습니다. 위법한 행위 맞습니다.

○박성준 위원 위법인데 지금 학교라고 하는 것은……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요, 김민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의견 주시지요.

○김민전 위원 사실 저는 너무 어려워서 이 실태를 잘 몰라서 조금 여쭙보고 싶은데요. 가정에서 홈스쿨링하고 대신 학교를 졸업한 인증시험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정고시 이런 것으로? 그러면 홈스쿨링하는 대신에 보낸다 이렇게 논리를 잡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그런데 홈스쿨링은 개인 단위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학교의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외부적으로 여기를 나오면 학위를 인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홈스쿨링하고는 좀 다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위를 인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실제 인정이 안 되면 그건 사기이고 그것은 당연히 폐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정 안 되지만 대신해서 어떤 시험을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갔을 때 어떤 시험을 보면 인정이 된 다든지 이런 식의 절차가 있다고 하면 또 사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정확한 실태를 몰라서 사실 저도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사실 이 문제가 수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런 미인가 학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있어야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현재 미인가 학교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제가 최대한 짧게 몇 가지만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언하시는 분이 국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예, 학교정책관입니다.

○조정훈 위원 학습권 침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저는 이것 이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좌 극우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그 권리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령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학교에 대한 폐쇄와 아예 인가받지 않은 교육시설에 대한 폐쇄, 이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매우 다르게 학교라는 단어에 굉장한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허가받지 않으면 학교라는 단어를 쓸 수 없지만 영어로 스쿨(school)이라는 단어는 쓸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라는 단어도 쓸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니까 그런 교육기관들이 스쿨이라는 단어로 학생들을 모집해 나갑니다. 이 또한 코미디 아닙니까?

과연 대한민국에서 학습권의 침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학생과 학부모가 헌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기가 원하는 교육 형태를 선택할 자유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된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공립학교를 다니든, 아까 김민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홈스쿨링을 선택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위를 인정받든, 검정고시라는 제도

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면 공교육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력을 인정받는 것도 합법이에요. 그렇지요? 안 그러면 검정고시라는 게 필요 없을 테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학교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교육 수요를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백번 양보해서 법령 또는 학교라는 것을 인가해 줬는데 이 인가받은 조건을 지키지 않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학교에 대한 제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이니까. 계약을 하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미인가 교육시설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미인가 교육시설은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도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학부모들과 설립자들이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인데 여기에 있어서 국가는 언제 개입할 수 있는가. 저는 이 교육 내용이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가르치면 개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또는 공산주의를 가르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모든 교육에 대한 선택권은 주어져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두 분 의원님의 법안의 발의 취지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면 저는 폐쇄명령을 내리는 기준을 논의하는 것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가, 어떤 경우에는 폐쇄 명령 할 수 없는가. 이 논쟁은 붙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 굉장히 강력한, 1억이나 3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여하겠다는 하면서 이 교육법, 학교라는 법 시설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일체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 국가가 언제든지 폐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럴 권리가 국가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교육부……

○김준혁 위원 제가 잠깐만 먼저 질의……

○소위원장 고민정 김준혁 위원님, 잠깐만요.

폐쇄명령 기준이 어떤 법 조항에 있습니까, 시행령이든 어디든?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된다고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폐쇄명령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명칭, 수업 과정, 교수요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현재 판례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 저희들은 판례로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그러한 기준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지금 약간 좀 혼돈이 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김준혁 위원 혼돈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고민정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폐쇄명령을 하자 말자의 법이 아니에요. 폐쇄명령이 내려진 학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의견들이 조정훈 위원님도 그렇고 폐쇄명령을 국가가 아무나 한

테 막 다 하면 되냐라고 하셔서 이것은 조금 핀트가 잘못 맞춰져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이 얘기한 대로 폐쇄명령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김준혁 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박성준 위원 미인가 폐쇄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을 안 했을 경우의 문제인데 다른 핵심……

○소위원장 고민정 잠깐만요.

김준혁 위원님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김준혁 위원 차관님, 본질로 좀 돌아가지요.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고 대안학교나 여러 학교를 다니고 싶은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이런이런 공부를 하자’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 인가를 신청하면 다 받아 주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준혁 위원 그렇게 해서 대안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분명히 인가를 신청하면 인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청하면 받아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신들이 뭔가 깨름칙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혹은 뭔가 자기들만의 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헌법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예 인가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무허가의 교육기관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쇄명령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한 것이지요. 만약에 어떤 대안학교로 신청을 하면 다 받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명확한 거예요. 다 받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하니까 폐쇄명령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성국 위원님도 그와 관련해서 폐쇄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큰 틀에서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정훈 위원 제가 짧게 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아니, 법의 핵심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범위를 자꾸 넓히지 맙시다.

제가 올린 이 법안은 폐쇄명령을 무슨 조건으로 할 수 있느냐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그게 그냥 답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한 번만 더 반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김준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아까 국장도 얘기하신 대로 이 학교시설,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국가의 도움 없이 공교육 없이 우리 아이들을 다른 방식으로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등록이 있고 두 번째가 인가가 있습니다. 인가 학교는 학위를 인정받습니다, 대안학교로. 아실 것이고요. 등록은 등록을 하지만 학위는 인정받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문제는 등록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어떤 기준으로 안 하나?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등록을 안 받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언제든지 폐쇄명령인데 저는 이 폐쇄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나 대령도 없고 지금 판례로 결정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보면 등록 거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교육청에서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교육비가 굉장히 비싸서입니다. 사회통념상 너무 비싼 학교를 운영하는 게 맞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 특정 교육청에서 이 학교의 등록비가 너무 비싸서 등록을 거부하는, 저는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자기가 돈 내서 학교 측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대안학교로, 미인가 교육시설로 등록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법체계가 굉장히 구멍이 많습니다. 이런 구멍이 많은 것을 촘촘하게 메꾸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제명령만을 올리는 것은 법의 균형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촘촘하게 어떤 경우에 폐쇄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등록을 거절할 수 있고 등록할 수 있고, 이런 절차들이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동의가 되면 그 룰을 어긴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등록을 해 줄 수 있는 기준도……

○**소위원장 고민정** 지금 위원님이 반대하시잖아요.

○**조정훈 위원** 아니, 지금 그게 없으니까 반대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정리하시지요.

○**조정훈 위원** 앞단의 규정들이 촘촘하지 않은데 이렇게 폐쇄명령 하면 무조건 지키라는 강제조항만 있다면 국가의 권력, 교육부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이 법은 폐쇄명령을 하게끔 하는 법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계속 그쪽으로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무조건 다 국가가 폐쇄명령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없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없습니다. 미인가 시설이라 하더라도 어떤 판례에 의해서 이것은 학교로서 운영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만 국한되게 폐쇄명령을 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실은 폐쇄명령 한 적도 없습니다. 3년 동안 없었잖아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러니까 미인가 시설이라고 해서 정부가 다 어떤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미인가 시설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특별히 정말 헌법질서에 위반되거나 학습권이 침해됐다거나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폐쇄명령을 할 수 있어서 최근 3년간 없는 것이고요. 그런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 이 제재조항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렇지요. 즉 미인가 학교가 지금 130개 정도가 있는데 그 130개 학교가 다 폐쇄명령을 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쇄명령을 당할 지경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학교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했을 때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적 조치들을 지금 만들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꾸 미인가 130개를 다 국가가 마음대로 틈만 나면 폐쇄명령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이 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오히려 여야 의원들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다만 금액의 차이, 1억으로 가냐 3000만 원으로 가냐 이런 것인데 미인가 시설을 어떻게 국가가 다 폐쇄명령을 할 수 있나라고 하시는 것은 본질이 자꾸 흩어지는 것 같아서……

○조정훈 위원 본질이 흩어지는 게 아니고 이 법을 사용할, 이 법의 수정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이 법에 폐쇄명령을 강제하는 수단이 교육부와 국가에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 권한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기준이 지금 기껏 해야 판례 아닙니까? 기껏 해야 판례고 명문화된 법률조항도 없는데 그렇게 권한을 주는 게 비례성에 맞지 않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지난번에 저희 교육위에서 대학교 폐교명령 관련된 법안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대학교도 폐교명령 하면 안 되지요.

○조정훈 위원 그 법은 어마어마하게, 위원회까지 만들고 어마어마한 절차와 내용이 있지요. 어떻게 그것을 여기에 비교하십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그래서 어떤 교육기관은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도저히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 교육위에서 의결해서 법안 통과를 시켰고요.

그러나 이것은 대학이 아니라 그 밑의 단위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대해서, 그것도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그것도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교육부,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아까 계속 손을 드셔서.

○조정훈 위원 제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잠깐만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시간 주시면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예.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아까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 말씀 부분에 많은 공감은 하는데요 홈스쿨링이나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홈스쿨링할 수도 있고요 또 대안교육기관에 갈 수도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미인가 교육시설을 다님으로 해서, 어떤 경우는 학교가 갑자기 폐쇄가 되거나 문을 닫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 법을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기준은 다 실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또 정리가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관련된

세부적인,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교육청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쇄명령에 따른 실효성의 확보에 대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지금 논의가 너무 길어져서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법안소위가 한 번 더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조정훈 위원님이 지금 가장 강하게 반대의견을 갖고 계시니 교육부가 정확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음 법안소위 때는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학교 폐쇄 그리고 미인가 시설, 단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등록·인가 두 절차가 있기 때문에 미인가라고 하시면 등록된 학교조차 폐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짐작하고, 교육시설 폐쇄에 관한 기준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계적으로 뭐가 있었는지, 교육청들이 지난 3년 동안 폐쇄한 게.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저희 법안소위에 다 공유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4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쟁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문화학생 대신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개정안인데요. 지난 소위에서 관련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일단 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논의를 했었지요, 다문화로 갈 것이냐 이주배경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김준혁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부탁드립니다.

○김준혁 위원 아침에 당정조정회의 때 그 관련해서 차관님께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교육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정훈 위원 이견이 뭘니까, 뭘로 가자는 겁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이주배경학생.

○박성준 위원 김용태 의원도 이주배경학생으로 쓴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주배경학생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후에 같은 법안이 있어서 그때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5항 고등교육법입니다.

자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대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학생 주거실태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3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 사항인데요.

제1항 관련해서 주거실태조사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주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매년 실시하도록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통계조사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 관련해서는 당초 개정안에서는 교육통계조사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주거실태조사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서 제4항 및 6항만 내용에 규정하였습니다.

수정의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항에서 주거실태조사 시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고 이 실태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서 지표나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체계·자구 관련된 사항은 지금 고등교육법이 26년 3월 10일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조문을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시행일 관련된 사항인데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이의는 아니고요. 매년 실시하는 것은 신입생들이 매년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님께 질의가 있는데, 이것 연계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도 학생 주거복지 관련된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등교육법의 연계법인데 그것은 올라오지 않아서, 통상 함께 연계하지 않습니까? 김용태 의원님 법도 연계해 가지고 두 개가 같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빠진 건가 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사학진흥재단법은 지금 사학진흥재단의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이고, 제가 알기로는 다음 소위 때 심사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이 개정안에서는 주거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그 재단법에서는 재단의 업무로 주거복지 증진 관련된 업무를 하는 내용이어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등 같은 법률 개정안이 있으므로 추후에 함께 의결하겠습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제6항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그 4항에서 이주배경학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면서 다른 법률에서 원용하고 있는 법률을 부칙 개정을 통해서 같이 정리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의사일정 제6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평가해서 공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원래는 이 실태평가와 관련해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을 때도 2003년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2022년 10월 18일 법 개정으로 실태평가는 빼고 실태조사에 대해서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실태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실태조사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정안은 그 실태조사를 배경으로 실태평가까지 하라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태조사는 전반적인 현황 파악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거고 실태평가를 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성과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8페이지 수정의견은 일종의 자구 수정 내용인데요. 지금 현행법의 1항에서는 특수교육 정책 수립 관련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3항은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2항에서만 실태조사 플러스 실태평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4항·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7페이지 보시면 4항에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는 부분이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평가를 구분해서 표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사 또는 평가로 자구를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페이지 부칙에 지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 따르면 시행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해야 현재 하고 있는 실태조사하고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실태평가하고 실태조사의 핵심적인 차이가 뭘니까? 한두 가지 사례만, 이렇게 되면 무슨 내용이 더 추가된다.

○교육부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입니다.

항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항목의 차이보다는 대학별로 우수 대학과 또 개선 요망 대학에 대해 개별 피드백을 해 주면서 우수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드리고 또 개선 요망 대학에 대해서는 개별 컨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는 개별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이나 개선 의지 등을 조금 더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결과를 공개하십니까?

○교육부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예, 평가할 때는 공개했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되면 공개하시는 겁니까?

○교육부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강경숙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자칫하면, 평가 결과를 공표하게 되면 교육청 간의 서열화가 우려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조사위원이어서 잘 아는데, 동의 입장이지는 한데 교육부가 교육청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습니까?

○교육부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예, 위원님 이것은 대학에만 지금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강경숙 위원 글썄, 대학예요. 교육청이라 그런 얘기인가 본데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표가 돼 버리면 대학 간의 서열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조사가지고도 사실 평가의 업무까지 나아갈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정책 개선이나 현장 지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공표를 하면서 평가의 의미로 굳이 강화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교육부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실은 조사로 변경한 이후에 대학의 장애학생의 선발이나 교육적인 지원에 대한 개선들이 평가 시기보다는 조금 더 미흡했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가를 하면서 대학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조금 더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제가 이해하기로는 장애학생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장애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잘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평가해서 하면 학교들이 더 잘 평가받기 위해서라도 더 끌어올려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도에서 하시는 거지요?

○교육부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예, 맞습니다.

○서지영 위원 저 조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의원님이 발의하시기는 했는데 이런 것 준비하실 때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대학생들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이런 법안들이 나올 때마다, 물론 대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떤 교육적 혜택을 주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부의 기본 목표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정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대학을 다니지 않는 직장 생활을 하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부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고민을 함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조사의 목표가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하게 목표인지, 이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가 이 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정

책을 새롭게 수립을 하기 위한 것인지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학교를 장려하고 채찍질하는 것 외에 교육부가 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후 저희 의원실로 자료를 주실 것을, 아니면 와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학교 재정도 없는데 학교만 일방적으로 이런 것 갖추어라 저런 것 갖추어라 하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부가 대학과 함께 공동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주거환경 관련해서는 이 앞에 있었던 법인데 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거니까 관련된 자료들은 있으면 서지영 위원님에게 꼭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이, 특히 이 장애인 경우에는 더 많을 겁니다. 그것을 그냥 복지부에만 맡겨 버리지 마시고요.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저희 국회로 주시면 저희가 또 조정하고 복지부에게 또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좀 보태 가지고.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학생 주거실태보다 청년 주거실태로 포인트를 잡아서 정부에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당이니까 당정 하실 때 하시면 좋은 이슈가 되실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의사일정 6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자료 2페이지입니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제5조에서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한부모, 제5조의2에서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도 조손가족들도 전부 교육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 맞추는 입법 조치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7항, 2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자료 2페이지입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과 그 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을 했고요. 유사한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에도 유사한 내용의 조문이 제정돼서 작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초·중등하고 같이 맞추는 거니까요.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의사일정 9항·10항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단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설치·운영,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3개 안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비용 부분하고 대통령 위임 부분이 각각 안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제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현실화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비용 지원 관계라든가 위임에 관한 내용도 필요한 조치기 때문에 6페이지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이 각각의 안에 포함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 약간의 문구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양 안에서 빠진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5페이지 보시면 부칙과 관련해서 대통령령 위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일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설치·운영 중인 센터들이 있

기 때문에 그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두는 그런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11항을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잠시만요, 몇 페이지 보면 되지요?

○전문위원 윤상열 11항은 따로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1페이지 보시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교육활동 내용을 자세하게 열거하는 내용이었는데 입법취지와 다르게 너무 범위가 확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이의가 제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마련한 게 10페이지에 보시면 이 개정안의 취지가 교육활동에 비대면 활동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주라고 보아서 교육활동과 지원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보다는 기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기타 다른 법률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참조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해석하는 것으로 하고, 이 개정안에서는 비대면 활동 부분만을 명백하게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일단 9항·10항부터 논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지금까지는 지정이었는데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큰 이견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합의된 것으로 하고.

11항은 지난번에 한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서 결정을 할게요.

수정의견 맨 끝의 것을 보시면 교육활동의 범주를 ‘비대면 활동을 포함한다’해서 괄호 안에 포괄을 시켜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저번의 논점이?

○소위원장 고민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법으로 규정을 하는데 비대면으로 교육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비대면 활동을 포함한다’ 하는 문구를 괄호로 처리한 것입니다.

○조정훈 위원 몇 페이지인가요?

○소위원장 고민정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행정업무에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포함한다’는 것은 그대로 가고 또 교육활동 외에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을 포함한다’로 비대면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는 뜻인가요?

○강경숙 위원 정의라기보다도 교육의 방법에, 방식으로 규정을 한 거지요. 요즘에 위

낙 SNS, 메신저, 이메일, 학교플랫폼 이런 통신매체를 많이 활용하니까 그런 게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의를 규정하기보다도 그런 걸 좀 포함해서 방식으로 이런 걸 함께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조정훈 위원 예를 들어서 우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맨날 보는 이메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경숙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조정훈 위원 우편이 비대면입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조정훈 위원 우편으로도 교육활동을 하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가정통신문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조정훈 위원 가정통신문.

○소위원장 고민정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전에 학생이 성기 사진을 교사한테 보냈는데 DM이었나요, 그 사건이 교육활동 중이 아니라고 해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명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강경숙 의원님이 이 법안을 내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수정안을 보면 처음에 했던 게 조금 더 광범위하고 보호해 주는 면이 있어서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면 가운데 수정의견……

○소위원장 고민정 수정의견이라고 쓰여 있는 거요?

○백승아 위원 예, 개정안과 수정의견(1차 소위 논의 반영) 그사이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교육활동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맨 앞에 ‘이 조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조에서 교육활동 및’ 이렇게 이렇게, 민원처리 그리고 행정업무를 빼고, 그러면 교육활동 정의에 대해서 혼동이 없을 것 같아서요.

○강경숙 위원 그런데 사실 정의는 아니거든요, 방식을 포함한 거라서.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정의는 아닌데 혹시 앞으로 그렇게 인식될 소지가 있으니 ‘이 조에서’라고 단서를 달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 조에서’ 그리고 밑의 중간에 ‘행정업무’를 빼고.

○소위원장 고민정 무슨 말씀인지.

○백승아 위원 ‘교육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면담·민원처리 등’ 그리고 팔호 전화, 우편, 컴퓨터 뭐뭐뭐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전문위원 윤상열 위원님, 19조 현행 조항을 보면 제일 앞의 시작이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강경숙 위원 한정이 있어요.

○전문위원 윤상열 19조에서 이미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해서 여기에 이 조에 관련되는 내용은 이 법에 한정된 해석이라고 이미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이 법에서는 19조만이 아니지 않아요?

○전문위원 윤상열 그렇지요.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조에서’ 그게 더 명시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전문위원 윤상열 교육활동에 관한 내용은 이 조에 한정된다 그런 의미로 집어넣자는 말씀이지요, 행정업무는 빼고?

○백승아 위원 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서 말하는 것. 그러면 어떨까요?

○서지영 위원 저 하나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고민정 예,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교육부에서 답을 주셔도 좋고 백승아 위원님이 답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해서 교권을 보호한다는 인식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우편·통신·SNS를 다 포괄하고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카톡이라든지 SNS로 어떠한 의견을 전하거나 학생에게 상담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학생이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교사를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지금은 비대면 방식까지도 다 포괄해서 준용하고 있는 것인지,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한 것인지, 수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그걸 여쭙보고 싶습니다.

○백승아 위원 교육부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지영 위원 그래서 백승아 위원님은 괜찮으신지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교육부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그 반대의 경우에도 지금 폭넓게 학생의 경우에 그렇게 주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서지영 위원 그게 비대면이라는 방식이라는 것이 법률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교육부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그렇게 주장하고……

○서지영 위원 그러면 교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비대면이라는 걸 규정하는 법률안을 만들고, 학생인권의 차원에서는 비대면이라는 용어가 법률상에 규정된 것은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부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예,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서지영 위원 그게 그런 균형점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나 논쟁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제가 지금 여쭙보는 겁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이 법안은 교권 보호에 관련된 법안이라 아마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다른 법에 넣어야 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견을 교육부에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승아 위원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 법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서지영 위원 비대면 방식이라는 게 사실 굵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저의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사실 학생인권침해에 관련해서는 모든 전방위적인 시공간을 초월해서 민원이 다 들어와요, 현실적으로.

○서지영 위원 그러니까 비대면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것과 규정이 안 됐을 때는 사실은 포괄적으로 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비대면 방식

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화함에 따라서 또 다른 쪽의 논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의 우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저도 동의되거든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보호받을 권리도 있지만 교사가 학생한테 하지 않아야 할 무언가를 해서 학생이 또 보호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는 교육부가 좀 고민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두 가지 질문 드리려는데 첫 번째는 3쪽과 4쪽에서 보면 이것은 대면인데 교육활동 범위에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활동을 삭제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에도 학교안전법상 교육활동의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보다 교육활동의 범위가 축소 해석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 법안의 교육활동 정의가 불일치가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 굳이 이걸 빼야 되냐라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백승아 위원님 질문에서 떠오른 건데, 실은 저희 의원실에도 교사가 수업시간 외에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인스타 DM 등을 주고받으면서 했던 내용을 보면서 학생들이 저한테 선생님의 부적절한 입장 아니냐, 정치적 입장이나 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그것도 교육활동이 되는 건가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런데 이것은 교원의 지위 향상에 관한 것이어서 약간 항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 조항에 그것이 포함된다면 교육활동으로서 갖고 있는 지위가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과 교사의 DM을 주고받는 내용을 갖고, 쉽게 얘기해서 학생도 걸 수 있고 또 교사도 학생이 나한테 부적절한 아까 그런 사례도 있고 이것 굉장히 전선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겁니다.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것 질문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교사분들은 이것에 찬성하십니까?

○강경숙 위원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예,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이것은 교원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실 함께 작성한 것이기는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육의 활동을 정의하는 항목이 아니거든요. 학교안전법에도 교육활동이란 이런이런 게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차용해 오려고 하다가 그것이 아니고 그런 우려를 저희도 담아서 그렇게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에는 왓 투 두(what to do)가 있고 하우 투 두(how to do)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우 투 두, 예를 들면 지금 SNS가 굉장히 범람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실제로 몇 번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는 방법 면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일 뿐인 거지요. 방식을 규정한 것입니다. 정의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내용인데 비대면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보냈다는 게 여기서 필요한 이야기인가요, 논점에? 이미 학생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조정훈 위원 그게 여기에는 담기지 않을 텐데.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내용인가요?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교육활동으로 인정이 된다면……

○백승아 위원 그런데 이걸 정의 조항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게 이 조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단서를 달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위원님, 이 조로 한정을 하게 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가 이 법의 다른 조항에서도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조치라든가 보호자……

○백승아 위원 꼭 이 조뿐만 아니라 이 법이?

○전문위원 윤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 조에서만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에서 한정된 의미가 다른 조에서도 다 전제를 하고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백승아 위원 이해했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그래서 이 법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고민정 사실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범주를 좀 넓혀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넓게 교권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폭이 좁아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수정의견으로 조율을 한 이유는 교육활동의 정의 안에 행정업무 같은 게 들어가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행정업무가 교육이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현재 법에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블라블라한 것들은 교권침해에 해당된다 하는 게 있으니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교육활동,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에다가 플러스 비대면 활동만 포함한다 해서 이것만 그냥 더 추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적 부분은 어떤 법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국민의힘에서 연구하시고 논의하셔서 발의를 하시거나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권 보호에 해당되는 법률안이어서 이 안에 학생까지 다 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정훈 위원 이걸 넣자는 주장은 아니고, 저희에게 숙제를 주시면 하겠는데 민주당도 같이 여당이니까 책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10페이지 수정의견 이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이 교육활동에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을 포함한다’로 읽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활동의 정의지, 이것은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를 정의한 거지 정의가 아니고 또 다른 것이냐라고 해석이 됩니까? 이것은 차라리 교육활동 및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매체를 통한 학생과 교사의 비대면 활동 이렇게 아예 빼 버리든지.

○소위원장 고민정 저도 사실은 그 의견이 있는데, 왜냐하면 법을 만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괄호 안에다가 쓰면 기존의 교육활동에 플러스 되는 것이냐라고 이해하시지만 이 법을 처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법 안에서 교육활동의 정의는 괄호 안에 있는 것만 정의하는구나’라고 읽힐 수도 있기는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육활동의 범위를 축소시키려고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정훈 위원님도 비슷한 의견을 주시는 거여서.

차라리 그냥 ‘교육활동과’라고 하든지 ‘및’이라고 하든지. 그래서 교육활동에다가 비대면 활동을 포함한다는 것을 괄호로 하지 말고 그냥 대등하게 놓는 것이 목적 달성에 맞

지 않나요?

○강경숙 위원 저는 어차피 이것을 포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괜히 정의에 대해서 고민이 되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교육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말씀하신 대로 괄호에 넣는 거랑 수정의견의 교육활동 앞에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어떻게요? 다시.

○교육부차관 최은옥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괄호 없애고요.

○소위원장 고민정 서지영 위원님 의견.

○서지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쭙게요.

아까 조정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가지고 저도 다시 4페이지를 봤는데 수학여행, 체육대회를 제외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수학여행, 체육대회를 제외하고’ 이 이유가 궁금하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것은 개정안에서 제외한 것이고 저희 최종 수정의견에는 그것을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서지영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대면 말씀 교육부에서 제안하신 게 오히려 조금 더 진전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려하는 것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자꾸 대결적으로 가는 모양새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그래서 제가 백승아 위원님께도 이게 괜찮냐라고 여쭙본 게 비대면이라는 용어와 아주 구체적인 비대면의 어떤 형태를 넣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비대면 용어가 들어간 학생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것이 법률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요를 만들어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인권 보장적 차원에서 교원의 지위 보장 차원에서는 굳이 비대면이라는 말을 넣든 안 넣든 간에 광범위하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용어를 구체화함으로써 대결적 관점에서의 또 다른 법률안을 만들고 이런 수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으신지, 거꾸로 이 상황이 만들어질까 봐.

○소위원장 고민정 서지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실에서는 ‘비대면이 교육활동에 안 들어갑니다’ 하면서 이것을 규제를 못 하는 겁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현실에서 비대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성기 사진 보냈는데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교보위에서. 그것 때문에 강경숙 의원님이 이 법을 내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대면·비대면 교육활동 중인’으로 고쳐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정훈 위원 10페이지요? 10페이지 19조?

○소위원장 고민정 예, 최종 수정의견에 괄호를 빼 버리고 ‘대면·비대면 교육활동’ 이렇게.

맞지요, 아까 교육부 의견이?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구체화시켜 버리면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좀 병병하게 만들어 놓고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이것을 더 구체화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거든요.

두 분, 백승아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은 괜찮으시다고 그랬고.

○**강경숙 위원** 예.

○**소위원장 고민정** 괜찮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잠깐만요.

병병하게라는 표현도 뭘지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법적인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고 아까 백승아 위원님 사례도 있는데. 이 조항의 제목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규정하는 조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면 침해라는 게 인정받으려면 그 행위 자체가 교육활동의 일환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대면·비대면 교육활동이라고 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비대면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비대면 교육활동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중 강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사와 학생 간의 1 대 1 인스타, DM 등등도 이제 교육활동이 되는 겁니까?

이것 병병하게 할 수도 있지만 되게 논쟁거리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만 이게 각자의 법률과 피해 행위를 다룰 때 앞으로 되게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예를 들어 대면 교육활동도 그렇게 문제 제기하기 시작하면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디까지가 대면 교육활동이냐, 수업 땀 시작부터 수업 끝나는 중 치는 시간만 교육활동이냐, 학교를 벗어나면 교육활동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면 대면 교육활동도 사실은 논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 교육활동을 넣는 것은 코로나 시기에 중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 현실적으로 새로운 교습 방식이 생겼기 때문에 이 비대면 영역도 좀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조정훈 위원** 원하신다고 하면 저는 반대는 안 하겠지만 이것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육활동이라는 게 선생님이 ‘나는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가 교육활동이야’ 규정 안 하고 실제 학부모나 학생들을 만나는 순간 자체가 다 교육활동이 되는 거예요, 교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대면·비대면을 넣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규정을 다 하겠어요?

조 위원님, 우리 의정활동이라는 게 오늘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만 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24시간이 다 의정활동이잖아요.

○**서지영 위원**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교사의 정치기본권 규정할 때 그것은 굉장히 상충되는 주장입니다.

○**박성준 위원** 그렇기는 한데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소위원장 고민정 그 부분은 추후에 토론회를 열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 보도록 하고요.

○조정훈 위원 이것 교원단체 이견 없는 거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예, 그렇다고 하시니까.

의사일정 1항, 9항, 10항 및 제11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해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12항 2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고전번역원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번역원의 목적 및 사업으로 국가고전번역사업의 정보관리를 명시하고 번역사업을 수행한 주체가 번역 관련된 정보를 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번역원 외에 대학 연구소 등 여러 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합 검색이 어렵고 국가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도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 번역 정보까지 통합 관리할 경우에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 사항입니다.

국가고전번역사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법률상 정의가 없기 때문에 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관리로 개정안이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고전문헌에 대한 정의는 현행법 제2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15조 3항 관련된 사항인데 이 개정안의 취지가 재정 지원으로 번역사업을 수행한 주체가 이것을 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 시행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금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정비 등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공포한 날부터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준혁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김준혁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이 개정안은 약학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5년 4월 8일부터 개정 약사법이 시행돼서 약사 국가시험을 응시하려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고등교육법을 같이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37개 학교가 있는데 다 평가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이어서 3페이지 내용입니다.

간호교육평가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인데 지금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이 공통적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 양성이기 때문에 이 기존 순서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약학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개정안에 동의하고요 그 순서 수정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13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2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인력으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한 육천팔백 분 정도가 평생교육기관 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고 현행 보육교사나 청소년지도사에도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수정의견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교육이라는 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교육대상을 보다 포괄할 수 있도록 제26조 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즉 민간 영역에 배치된

평생교육사를 포함하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평생교육사가 배치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지금 제정되어서 그 시설 자체가 이 법에서 삭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평생교육기관 등의 장이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고 입법례를 보면 동일 취지의 규정이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 개정안에서는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보수교육의 대상·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유사 입법례에서도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개별 부처에서 알아서 하도록 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5페이지에 보면 전체 취지에는, 법안 개정 입법 배경에는 동의하고요. 제가 문구를 잘 이해 못 하는 것 같은데, 불리한 처분 금지 의무 및 과태료에서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는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분은 할 수 없다 이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좀 더 주시겠다고 하거든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이 부분은 보수교육을 참여하는 경우에 그 부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보수교육을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보수교육을 했다고 돈을 안 주거나 그런 이유의 불이익?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의사일정 16항에 같은 법률 개정안이 있으므로 추후에 함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즉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의 대학생들 중

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 즉 2배 이하인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대학 입학 유인 구조를 마련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대학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 학생들의 현황을 보면 대출 비중에 있어서 지방대학 학생의 비중이 전체 학생 대비 5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효과를 보면 이자가 면제되는 대상이 한 6만 명 정도 되고 일인당 지원되는 효과는 약 8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48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득 등이 기준이 아니어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형평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 사항은 4페이지 내용인데요 26년 7월에 시행 예정인 조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통일하기 위해서 문구를 수정한 내용인데 그 부분은 단서 사항에서 2015년 이전 대출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 시행일 관련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일 사항은 지금 개정안은 26년 7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산 구축 등의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간단한 인용조문 수정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전 위원 질문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사실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이자가 감면되고, 그러면 상환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취업 후 상환이기 때문이에요 취업해서 일정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상환합니다.

○김민전 위원 만약에 상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부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국세청에 저희가 학생들이 취업한 이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기간별로 일정액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총 만기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일정 소득, 지금은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률을 보수에서 월급에서……

○**김민전 위원** 매년?

○**교육부차관 최은옥** 매월 이렇게 빼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학생이 원든 원치 않든 무조건 그렇게 공제가 되게 돼 있다는 거지요?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전문위원님 보고를 들으니, 이 자료에도 있습니까라는 감면 효과가 일인당 연간 8만 원으로 자료에도 있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발의 목적은 지방의 청년층 유출 문제, 국가균형발전, 그래서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었는데 1년에 8만 원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면 지방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의 청년층 유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재정 규모로 봤을 때는 한 연간 48억 원 정도 정부의 세금을 지원하는 데 이 48억 원으로 좀 창의적인 아이템을 정부에서 정부 정책으로 마련하시는 게 오히려 실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학생들이 1년에 8만 원 이자 감면해 준다고 지방으로 전부 다 몰려가겠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그냥 시혜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이 법안의 이름을 좀 봤더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인데 그 취지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의 경감이라기보다는 실은 상징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뭐라 그럴까요, 비수도권 대학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비수도권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유인책으로 이게 되는 겁니까? 8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좀 희화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강력한 유인책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 법을 개정했는데 그때는 소득 6분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것을 수도권 비수도권 공히 개정을 해서 7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합시다만 이것도 그 일환으로 한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거 위원장님이 내시기는 했는데 저도 이 효과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에 다녀도 서울 경기 인천에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강원도 원주나 충청권에서도.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도 적용 대상이지요? 거주의 의무는 없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지역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면.

○**조정훈 위원** 다니기만 한다면?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조정훈 위원** 이게 만약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대학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예산 추계가 얼마 더 올라갑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산 추계가 비수도권 학생이 한 56% 되고, 56%가 48억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습니다.

○**조정훈 위원** 한 40억 더 들어가면 전국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개정안, 6분위까지 이자 면제해

주는 법이 올해 7월에 시행이기 때문에 그 시행 전에 전체 학생을 소득 분위기를 또 올려서 면제를 해 주기보다는 지역대학 학생을 우선으로 해 주는 게 배려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거는 효과 면에서, 저는 대한민국 대학생 중에 단 1명이라도 이거 8만 원 아껴 준다고 서울 경기 인천 대학에서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이 있을까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고 보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이 정책만으로도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조정훈 위원** 아니 이 정책으로. 아니 ‘이 정책만으로’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예산 48억을 낭비한다는 뜻이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지는 않고요.

○**조정훈 위원** 이걸로 인한 상승효과가 몇 명이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몇 명이나 서울 수도권 대학 진학 대신 이쪽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소위원장 고민정** 법안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만약에……

○**조정훈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소위원장 고민정** 마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조정훈 위원** 차관님, 저는 1명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1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무리 48억이 국가예산 700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메시지도 꼬이고 효과도 없고 실질 효과도 없어요. 차라리 지방에서 정말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한테 전액 장학금을 주거나 그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8만 원씩 나눠 준다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잠깐만요. 저도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주당 위원장 법안이어서 반대를 하시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조정훈 위원** 그렇지 않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대학에는 RISE 사업으로 예산 지원을 하지요. 그리고 학생에게는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건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것 하나만으로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연간 48억이 아니라 4800억이었으면 야당 위원님들께서 찬성 하셨겠습니까? 예산 홍청망청 쓴다고 하면서 반대하셨겠지요. 많으면 많다고 반대하시고 적으면 적다고 반대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육성해 내기 위해서 방안들을 찾아 나서는 과정 중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는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특히나 형편이 많이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이자만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장학금을 줄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포폴리즘 정책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시잖아요.

○**조정훈 위원** 대학생 장학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의 만큼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것을 넓혀 가자라는 의견인 거고요.

○**조정훈 위원** 그거는 속기록에 정확하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 제가 얘기할 때는 좀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게 8만 원이 사실은 너무나 먼 발에 오줌 누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 국가는 대학에게 수억 수천억에 해당되는 RISE 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펼치지요. 거기에 준해서 학생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지원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거 실태도 자꾸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장애인 학생들에 대해서도 자꾸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를 궁리하고 연구하는 과정이지. 제가 이거 하나 한다고 해서 표가 더 올라갑니까, 제가 당선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폄훼하시는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좀 유감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 저도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님 때 신용보증재단이라는 데서 근무하면서, 50만 원 소액대출 있잖아요. 누가 50만 원을 대출하러 도청까지 찾아와 가지고 신분증 떼서…… 이상하잖아요. 그런데요 청년들이 대부분 아침부터 줄을 서 가지고 50만 원 대출받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취업하기 전이기 때문에 8만 원이라도 계속 연체가 되고 누적이 되면요 늘어나고 또 이것 때문에 다른 신용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는 이게 아무 돈이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하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장학금, 모든 대학생들 다 주면 좋지요.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면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특히 지방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저는 이런 혜택을, 이거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조교를 3년을 했어요. 무지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교수님 8명 수발을 다 들어야 되고 학부생들 다 챙겨야 되고. 그런데 그중에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었는데 몇 녀석이 등록금 낼 돈이 없어 가지고, 저도 힘든데 그 친구들 제가 보증을 서 가지고 그래서 등록금을 해결을 했어요, 세 친구였는데. 알아서 내겠거니 생각을 했지요. 하여튼 나중에 한 10년이 더 지나서 ‘형, 이제 등록금 다 냈어요’ 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녀석은 12년 만에 연락이 왔고요.

그걸 쪼개고 쪼개고 쪼개 가지고 그렇게 내서 갚고, 한 녀석은 지금도 그래서 연락이 됩니다. 강릉 사는 녀석인데 강릉에서 학원 강사하고 있다고 형 한번 와서 특강 좀 한번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가겠다 이렇게 약속만 하고 못 갔는데, 저는 이게 작은 금액인 것 같지만, 저의 어떤 삶의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이게 적은 돈은 아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이 법안이 갖고 있는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수정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김문수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의 말씀 동의하고요. 다만 제가 틀릴까 봐 찾아봤는데 김준혁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그 대학이 서울 소재 대학 아니었습니까? 서울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차라리 40억 더 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이거 하시지요. 저희 전원 찬성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좋습니다.

○**조정훈 위원** 왜 굳이 서울 경기 인천 대학을 빼고 합니까? 다 하시지요. 예산 40억 더 늘어나는 거 솔직히 예산 부담이라고는 안 하실 거지요, 차관님? 국회에서 정리하면.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저 한말씀만 좀 올리고 싶은데요.

○**소위원장 고민정** 예,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기본적으로 저희 학생들에 대해서는 소득 분위에 따른 국가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대학 학생에게도 다자녀의 경우에는 전액이고 소득 분위에 따라서 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하는데 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그 장학금을 받고도, 지금 7·8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전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고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다 주자고요, 40억 더 넣어서.

○**소위원장 고민정**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안이 모든 대학생에게,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 다 그냥 무료 장학금으로 가지요. 우리가 다 원하는 방향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조금 더, 지방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한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조금 더 유인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는 겁니다.

그냥 모든 대학생들에게 다 하자. 그러면 9구간 10구간은 왜 안 줘니까?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이런 혜택 주자 하는 것이고 예산상의 큰 부담도 없으니 사실은 여야 간에, 야당 위원님들이 이거 가지고 반대하실 줄은 정말 제가 상상도 못했거든요.

○**조정훈 위원** 저는 이 법안 발의하신 위원장님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개인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즉 아직 취업이 안 된 학생들에게 이 보조금이 굉장히 의미 있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라는 것에 그 정책 목표가, 서울 경기 인천 외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취지로 말씀하고 계신데 ‘예산 40억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은 못 한다’ 이런 논리 하시면 나중에 곤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 그냥 다 가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정책 목적도 두 가지가 다 들어 있는 건데.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발의를 하시지요.

○**조정훈 위원** 아닙니다. 이것만 빼면 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학 글로컬 사업이나 RISE 사업들도 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지원을 안 하나, 훨씬 경쟁력 있고 글로벌하게 더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그런 의도에서 법을 이렇게 만든 것이니 저의 의도에 맞게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수도권에 있는, 7·8구간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저기를 주자라고 하시면 또 법 개정을 하셔서 추후에 발의·통과를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는 이 법안을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드리면 어차피 다음 주 법안소위 합의했으니까 그때 이것을 앞 번호로 올리시지요. 그러면 저희도 한번 대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정도의 돈 줘 봤자 학생들이 좋아하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주냐?

○**조정훈 위원** 그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하니 그리고 ‘지역에 있는 비수도권 대학이 경쟁력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대 10개도 만든다’. 저희도 취지는 다 이해하는데 정책의 효과적인 면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법안소위에서 맨 위로 올리시는 것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참 씁쓸합니다.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 하는 것이어서 사실은 토론이 붙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주자라는 법안이 새롭게 발의되면 또 한 단계 나가겠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이것조차 반대를 하셔서 저로서는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법안 논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2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치된 외국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평생교육 인프라 확대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보시면 대구에 있는 대구국제학교, 인천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대학교들이 주요 적용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적용대상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의 적용대상 첫 번째 항목,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상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이고요. 그 외에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외의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할지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법에서는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더해 해당 법률을 준용하는 외국교육기관도 같이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이 자료에 교육부가 동의하는 취지로 의견을 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법안이 24년에 발의가 됐고 의견 수렴을 그 직후에

한 거라서 최근의 대학 의견 수렴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다시 해서 검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교육부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왜냐하면 이 법안을 심의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한참 전인데요.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사실 이 법안은 제가 검토를 쫓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교육기관도 또 해당 교육기관 안에서 그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평생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 취지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이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이고 교육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셔서 약간 당혹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 자체가 갖고 있는 긍정적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일단은 오늘 마땅히 법안소위 통과되면 좋겠지만 교육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일주일 정도 더 검토하셔서 다음 주 법안소위 때 이 법안이 합리적으로 잘 통과될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외국교육기관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들의 의견?

○교육부차관 최은옥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국제학교 같은 이런 외국교육기관이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시설은 저희 국내 대학도 수익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단 전체적으로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앞서도 얘기했지만 개별 법률에 따라서 외국교육기관과 관련된 것은 이 안에서 다른 논의의 대상이고, 실질적인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이고 이 안은 대부분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이 안에서 먼저 이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별도의 교육기관들인데 그것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에서 좁혀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강 위원님.

○강경숙 위원 다 아시겠지만 보니까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는 외국인 학교예요. 그런데 저도 좀 알아보니까 이게 과실송금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를테면 여기 학교에서 벌어들인 어떤 수익금을 다시 본국으로 보내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다만 법적인 정합성에 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이 외국교육기관은 현재 외국교육기관법 특례법 적용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 감독 체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면, 쉽게 말해서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최종 책임을 지고 어느 법에 따르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정합성이 교육부에서는 철저하게 봐야 되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법안이 평생교육법에 만들어졌을 때 실제로는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교육부차관 최은옥**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국제교육기획관입니다.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 평생교육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한 안전조치라든지 학습비 반환 이런 예상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규정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가 다 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벗어난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방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그래서 어디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관리주체가? 평생교육법에?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예,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되게 되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 연수구……

○**백승아 위원** 그런데 외국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이 아니라 외국교육기관법 특례법에 적용받잖아요. 그런데도 평생교육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부대 의무로서 평생교육시설을 두기 때문에 간주해서 등록의 의무가 없고요. 만약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도 그 체계에서 일정한 학습자 보호를 위한 감독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예, 그 부분은 저희 소관 과랑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허가가 돼서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허가·감독 주체를 누가 가져갈 건지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을 좀 분명히 해서 등록을 해서 평생교육법으로 확실하게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는 우리나라 평생교육기관과의 경쟁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는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말씀을 조금 올리자면 외국교육기관이라는 게 외국기관의 정주 여건 향상을 통한 외국 인재 유치라든지 그런 측면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적으로 그 가족들이라든지 또는 지역주민에게도 반사적 이익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외국인 학교도……

○**백승아 위원** 그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정을 열면 기존 평생교육기관의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이라든지 또는 가격이 고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심사하기로 했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기록을 위해서 짧게 남겨 두면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을 하게 해 주나 마냐의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 돈 내는 경우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 평생교육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국가 예산 지원을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에도 해야 되냐라는 정책적 결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국내 기관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원부터 시작해서 대학,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외국교육기관이라고 송도에 있다고 대구에 있다고 인천에 있다고 열어 준다,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이런 것은 민주당 위원님들이 더 주장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소위원장 고민정 편견을 갖지 마십시오.

○김준혁 위원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개념이 좀 다른데 여기서 길게 설명하기는 그렇고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이게 되게 되면 예산을 국가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기관?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자체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에는 보통 부설 평생교육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예산 지원 없이 자체 수익을 마련해서, 수강료를 받고 운영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예산이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이 법으로 근거를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인천에 있는 그 좋은 인프라들을 좀 활용하는 것이 주변 주민들에게는 이득이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의견 청취를 조금만 더 하시겠다고 하니 다음 주 법안 소위 할 때 결정할 테니까 그 전까지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법안이 몇 개 안 남아서 마저 다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학교급식법은 하지 않았나요?

○소위원장 고민정 두 묶음입니다.

의사일정 17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아까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부 지원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이 법은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부모가족법 제5조의2가 반영이 안 된 것을 반영하는 내용

이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법안이 길어요.

○소위원장 고민정 제가 크게 가닥을 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3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일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하려는 내용이 또 하나입니다.

먼저 2페이지, 현행법은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인 전문가 등에 대한 출석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3개 의원안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내용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4페이지에 대동소이하지만 3개의 내용을 다 포괄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유사 입법례를 보면 법률에서 몇 월 며칠로 날짜를 특정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기보다는 법률에 행사의 취지에 맞는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법례에 따른 교육부의 수정의견이 7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 5년을 주기로 하고 있는데 3년을 주기로 하게 되면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기 전에 재설계가 반복되는 혼란이 있을 우려가 있어 교육부는 신중 검토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요 기본계획 주기 단축하는 것 이외에는 자구 수정 정도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일단 1페이지 주요 내용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폭심의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이거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3년으로 할 것인가, 5년으로 하자 하는 게 교육부 측 의견이시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기존의 5년 그대로 두자.

○소위원장 고민정 기존 5년 그대로?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고민정 5년에 다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주간을 만드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학교폭력의 날 주간은 이미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저는 물음표고요. 이거를 범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의문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미 안 하는 학교 없고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 효과를 끌어올려야 되겠지요.

○김준혁 위원 그런데 한병도 의원님의 안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유네스코에서 ‘학교폭력 및 괴롭힘 반대의 날’로 지정하고 있는 날이 11월 첫째 주 목요일 날이에요. 유네스코가 이미 지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안도 맞춰서 그 주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마다 다 하고 있지만 또 이날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우리가 어버이날이 있다고 해서 그날만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건 아닌 것처럼 학교폭력은 늘 예방해야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위원장님, 부칙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교육부는 일단 학교폭력예방의 날 관련해서 올해 당장 시행하는 거는 학교에 혼선이 있을 우려가 있으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무슨 혼선이 있나요?

○전문위원 윤상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싶어 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지금 11월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혼선이 뭐가 있나요, 날짜 지정하는 것이?

교육부.

○교육부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주간은 이미 올 초에 학교별로 학교 교육계획에서, 학운위의 심의를 통과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학교별로 진행된 주간, 이게 즉시 공포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계획을 다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적용하는 거를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저도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소위원장 고민정 예,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그런데 학교폭력예방주간이나 날은 보통 3월 4월 5월, 다 초반에 하거든요, 그때 새 학기고 한 학년 동안 잘 지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11월에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유네스코는 왜 11월로 했을까요?

○조정훈 위원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양은 가을학기거든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렇게 따지면 9월에 해야지.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1학기 초나 2학기 초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1월이면 거의 마무리하는 느낌이거든요.

○소위원장 고민정 교육부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유네스코가 그렇게 한 것도 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일로 하는 것이, 해당 규정상 다른 날로 기념일을 정하기보다는 보통 인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연초에도 어차피 학교폭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방교육, 신학기 교육을 합시다만 이 주간은 저희들이 그런 유사 입법례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념일에 관련된 규정을 쫓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기 초에 필요하면 하고 이 법이 통과되면 11월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 조항이에요?

○교육부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이 부분은 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 주간들은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백승아 위원 의무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예, 규정상으로는 ‘주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주간으로 하지만 그때 행사를 할지 말지 여부는 학교에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부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승아 위원 학교에서는 주간으로 정해지면 합니까, 100%.

○조정훈 위원 이 법에 날짜가 적혀 있나요? 적시되어 있어요?

○소위원장 고민정 예, 법에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적시돼 있어요.

○조정훈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백승아 위원 저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조정훈 위원 유네스코에 연락해서 바꾸면 돼요. 유네스코가 무슨 하늘입니까? 유네스코에 연락해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면 되지.

○백승아 위원 그냥 저는 교육부 수정안 말고 한병도 의원안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7페이지에 보시면 한병도 의원안에는 그렇게 날짜를 딱 정해 놓지 않거든요, 11월로. 이거를 11월 첫째 목요일 그렇게 정하라는 거는 학교현장에 있을 때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학기 초에 해야 될 일을 학기 말에 그러면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한병도 의원님 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7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들쭉날쭉할 것 같아서 날짜를 하나로 모으자는 것 같은데요.

○백승아 위원 그거는 학교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꼭 11월 첫째 목요일을 예방의 날로 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효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학기 초에 해야 효과가 있지 이거를 11월에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병도 의원안으로 해 주시지요.

○교육부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일단은 한병도 의원님 안에 보면 그날은 학교별로 학교장별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관이 지정하고 그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음에 논의해 주세요. 이게 위원님들 눈에는 ‘뭐 저거 가지고 그래?’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학교에서는 이거를 꼭 해야 된단니까요. 중요해요. 제 눈에는 이게 딱 걸려요, 지금.

○조정훈 위원 그러면 유네스코에 연락해서 이것 바꾸라고 하세요. 제가 유네스코 연결해 드릴게요.

○백승아 위원 이거를 학기 초에 해야지 왜 11월에 합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논의를 한 거니까 추후에 논의하지 않겠고요. 이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어쨌든 지정을 하는 거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1학기에 할지 2학기에 할지 그 날짜에 대한 거는 한병도 의원실하고도 논의를 해서 교육부 의견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다음번에 그 부분만 논의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고민정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교육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강경숙 고민정 김문수 김민전 김준혁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조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차관 최은옥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학교정책관 김영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